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9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김석기·백종현·김 건
박형수·박성훈·박수영
권영진·성일종·김기웅
이달희·윤상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한식진흥법」은 한식(韓食)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 및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연구소·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식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식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식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식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인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등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같이 현장 중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고 전통과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 도시인 경주에 한식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한식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식의 세계적 확산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대학교를 법인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보며, 본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주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하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되, 한식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식대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한식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총장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고, 부설교육기관에서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식의 해외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할 수 있음(안 제26조).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한식(韓食)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제2조(법인) ①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한식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본다.

제3조(설립) ① 한식대학교의 본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식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한식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한식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식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

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이 경우 한식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6조(임원) ①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식대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식대학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총장) ① 한식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식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식의 세계화, 해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한식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거나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농어업·식품·한식·문화·외교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회계 등

제10조(사업연도) 한식대학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식대학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식대학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식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때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식대학교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식대학교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식대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식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사 등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한식대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식대학교에 한식 및 한식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식대학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한식대학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
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
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학생) ① 한식대학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 학생을 창의적 한식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일정 기간 국내외 식품·외식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하거나 현장실습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총장은 현장실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한식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은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해외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대학의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④ 한식대학교는 본교·분교·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등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식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한식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한식대학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민법」의 준용) 한식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식대학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식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식대학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한식대학교의 총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